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신남동)

□ 제안이유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및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및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지하수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바.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우리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 가정 및 기업체 현황은?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신고 및 허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하수도세를 징수하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현황 비치하고 있음.
○지하수세 갑자기 시민에게 징수하면 많은 시민들의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지하수세 징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 2008년 35% 수준 2009년도에는 45% 수준으로 점차 효율을 높이고 월 150톤 미만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수세를 면제 하고 있음.
○지하수세를 부과 징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 및 기업체에는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어 지하수 사용량을 알 수 있음.
○지하수의 오염 방지 대책은?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시에서는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교부시 현장을 확인하고 있음.
○지하수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 규제가 있는지?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에는 신고 및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있음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144호
의결년월일	2007. 9.14 (제138회)

제출년월일 : 2007. 8.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 및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및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 마.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지하수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기 설치 및 관

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바.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토출관직경”이란 양수를 위한 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토출관의 직경을 말한다.
6.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7.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8.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말한다.

제2장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및 보조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의 경우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

치하는 수위측정관의 경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3. 전시와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보조는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제28호 부천시”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시 소속 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6.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7.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회의 참석 및 위원회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5.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할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을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비용
2.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에 따른 비용
3.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에 따른 비용
4.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자금
5.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에 따른 사업비
6. 법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에 따른 비용
7. 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비용

8.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비

9. 제14조제4호의 차입금 상환자금

10.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및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따른 비용

1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1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5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안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

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 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 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 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격월로 계측기로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

3. 월별·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사용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4. 신설 계측기로서 사용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양으로 인정 조정 후 차기 검침 시에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조정

③ 계측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거한 계측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측기상의 미부과된 사용량 + 새 계측기상의 사용량

2. 철거한 계측기가 비정상인 경우: 새 계측기의 1일 사용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측기에 의한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제20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격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

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

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과태료 등

제24조(부과기준 및 감경)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처분예고)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조사·확인을 한 결과 위반사실

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부과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개시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29조(이의신청)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납부독촉) 시장은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31조(체납처분)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의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3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2008년도에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35를 곱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처분예고서								
예 고 제 호								
처 분 대 상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				
	지하수 관정 위치							
	인·허가번호 (허가일자)		제 호(년 월 일)					
처 분 사 항	위 반 사 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금 원정(W)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p>「지하수법」 제41조제1항 및 「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인)</p>								

【별지 제4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		년도	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관) 세입과목 (항) (목)			
위반사항	「지하수법」 제 조		
금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지하수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입일부인	수납은행:		①
	부천시장 (인)		

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	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관) 세입과목 (항) (목)			
위반사항	「지하수법」 제 조		
금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입일부인	수납은행:		①
	부천시장 귀하		

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납부자	주소		
	성명		
(관) 세입과목 (항) (목)			
위반사항	「지하수법」 제 조		
금액	금	원정	
납부기한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일부인	수납은행:		①

【별지 제5호서식】

과 태 료 처 리 부											
① 일련 번호	② 고지서 번호	③ 과태료 처분 통지서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의제기일	⑫ 법원 통보일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간		납부통지서 번 호	
	고지받은 일 자		과태료 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지하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년 월 일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신 청 인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size: 1.2em;">부 천 시 장 귀하</p>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수 신: (관할법원)

발 신: 부 천 시 장 (인)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가 제기되었으니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 내역	고 지 일 자		과태료 금액	
	부 과 기 관		이의제기 일 자	

첨 부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 초 납 부 일	
<p>위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인)</p>			